

## ◎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- 호

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6월 15일

국토교통부장관

### 시화지구 지속가능 발전협의회 운영규정 일부개정령(안) 행정예고

#### 1. 개정이유

시화지구의 지속가능한 개발 및 환경개선을 위해 구성·운영하고 있는 협의회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, 위원들의 윤리의식을 제고하는 등 그동안 운영 상의 미흡·미비한 규정을 보완·개선하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가. 민간위원의 연임 횟수를 신설함(안 제16조)

나. 전문가 위원의 추천을 시민·환경단체뿐만 아니라 협의회 참여기관도 가능하도록 하고, 별도의 추천위원회에서 평가 추천하도록 개선(안 제4조 및 제11조)

다.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경우를 운영세칙에서 정하도록 명시(안 제12조)

라. 위원의 법령 규정 준수 및 기피·제척 준수 의무 등을 규정에 명시(안 제17조)

마. 정부측 위원장을 국토정책관으로 조정하고, 영상회의를 도입하며, 정부측 위원은 대리참석이 가능토록 개선(안 제4조 및 제13조)

### 3. 의견 제출

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7월 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(참조 : 수도권정책과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유

#### 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#### 다. 의견제출 방법 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, 전자공청회

- 1) 전자우편(이메일) : smilexx@korea.kr
- 2) 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
- 3) 팩스 : 044-201-5562
- 4) 전자공청회 : 국민신문고(<http://www.epople.go.kr>)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수도권정책과(전화 : (044) 201 - 3685)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